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4
----------	-----

2024. 4. 30.(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4월 23일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용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가 신설되어 주민이 그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5조)
- 의견제출 방법(안 제6조)
- 보완요구 등(안 제7조)
- 검토 및 통보(안 제8조)
- 의견의 반영(안 제9조)
- 차별대우의 금지 등(안 제10조)
-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정 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4〉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2024. 3. 기준)

	시도	조례명	공포일자	구분
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2023. 11. 10.	타법개정
2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023. 10. 05.	제정
3	울산	울산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022. 12. 29.	제정
4	경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2022. 10. 31.	일부개정
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2022. 08. 10.	제정
6	경남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022. 07. 07.	제정

※ 자료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 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를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의견제출서 서식, 내용, 공동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대표자 표시 등 의견제출 방법에 관해 규정함.
- 안 제7조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구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때 처리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와 의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 제출 및 검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 제한적인 간접참여에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로 확대되어 지방자치 실현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등으로 법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제부서”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의뢰는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1. 제출된 의견의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의견제출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규칙명(※ 제정 의견의 경우 가칭) [] 제정 [] 개정 [] 폐지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 명칭	[] 제정 [] 개정 [] 폐지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356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 6. 11.>

1.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도의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8. 9.>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 6. 11., 2022. 8. 9.>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9.>

⑤ 삭제 <2022. 8. 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22. 8. 9.>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3. 1. 11., 타법개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